

#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2744 |
|----------|------|

발의연월일 : 2023년 8월 25일

발의자 : 오지연의원

## 1. 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하남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 및 응급의료 지원(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응급장비 설치대상 및 관리(안 제5조 ~ 안 제6조)
- 라. 응급처치 교육(안 제7조)
- 마. 응급의료의 홍보·지원(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 덧붙임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다.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라.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3. 8. 25. ~ 8. 30.
  - 의견 내용 : 없음
- 바. 부서협의 결과(보건정책과) : 특이사항 없음

##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

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하남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하 “개설자 등”이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예비군,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지원)**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타 지방자치단체 최근 조례 제·개정 현황

(2023. 07. 25. 현재)

| 연 번 | 자치단체명       | 법 규 명                                   | 제 · 개정 일   | 소관부서              | 비 고 |
|-----|-------------|---|------------|-------------------|-----|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7-06 | 보건소<br>보건과        |     |
| 2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6-30 | 보건건강국<br>보건의료과    |     |
| 3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7-12 | 장안구보건소<br>보건행정과   |     |
| 4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5-22 | 동안구보건소<br>동안보건과   |     |
| 5   | 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5-16 | 화성시서부보건소<br>보건정책과 |     |
| 6   | 전라남도 장흥군    | 장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4-19 | 보건소               |     |
| 7   | 전라남도 여수시    |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4-18 | 보건소<br>보건행정과      |     |
| 8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4-14 | 보건소<br>보건정책과      |     |
| 9   | 경상북도 영덕군    | 영덕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3-31 | 보건소               |     |
| 10  | 전라남도 강진군    | 강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3-30 | 보건소               |     |
| 11  | 충청남도 공주시    |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3-15 | 기획감사실             |     |
| 12  |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2-27 | 보건소<br>보건행정과      |     |
| 13  | 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광역시 동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7-10 | 보건소<br>보건행정과      |     |
| 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7-06 | 보건소 의약과           |     |
| 15  | 광주광역시 동구    |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2023-04-28 | 보건소<br>건강정책과      |     |
| 16  | 부산광역시 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4-05 | 보건소<br>보건행정과      |     |
| 17  | 부산광역시 북구    |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3-29 | 보건소<br>보건행정과      |     |
| 18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7-06 | 보건소 의약과           |     |
| 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4-14 | 보건소 의약과           |     |
| 20  | 광주광역시 남구    |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2-27 | 보건소<br>보건행정과      |     |
| 21  | 대구광역시 북구    |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6-12 | 보건소 보건과           |     |
| 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3-06 | 보건소<br>보건행정과      |     |